# 더샵 청주센트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	l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	제지역	청주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4.05.(금) 2024.04.11.(목)		2024.04.16.(화)	2024.04.17.(수)	2024.04.23.(화)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u> <u>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u>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sup>2</sup>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 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П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05.(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08 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6.(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579 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 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4.04.11.(목)	2024.04.11.(목) 2024.04.16.(화) 2024.04.17.(수) 2024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포스코이앤씨 청주마케팅사무소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료	· - 1228, 2층(이랜드타운힐스 건물상가 2층)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청주시 흥덕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 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 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 흥덕구 공동주택과-13358호(2024.04.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29-2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 총 986세대(조합원178세대, 임대60세대 및 보류지 2세대 제외) 중 일반분양 746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1세대 [특별공급 1세대(생애최초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최초입주시기 : 본 주택은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시기는 계약후 2024.05.27일까지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 품목(발코니확장) 대금 등 입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완납후 즉시 입주 가능

#### ■ 공급대상

Ш

ı	주택		주택경급면적(m²)		·)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생애 최초	계
ı	2024930008	01	084.9600C	84C	84.9600	27.8500	112.8100	48.9910	161.8010	45.7073	1	1	1
l	2024930000					합 계					1	1	1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주택형	공급	동	호실 구분	해당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Tio	세대수	구분	포를 T판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4.05.27. 까지
084.9600C	1	101	702	1	97,311,000	251,279,000	348,590,000	34,859,000	313,731,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잔금을 납부기한(2024.05.27.)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한 사항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세대는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없는(발코니 확장 제외) 세대입니다.
- ※ 잔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T 10	227 70 67	계약 시	2024.05.27. 까지	
084.9600C	16,000,000	1,600,000	14,4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b>분양대금</b> (계약금)	농협은행	301-0295-6110-51	복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b>분양대금</b> (잔금)	추후 별도안내 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복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은행	301-0295-6103-11	복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42동 602호 계약자 →'1420602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 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전매 포함) 체결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 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15만원입니다.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인지세 15만원을 각 1/2씩 분담하여 납부 합니다.
- ※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는 계약자 등은 직접납부 하여야 합니다.
  - -2023.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2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빌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8년기正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Surrement Et 14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IV-1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b>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대상자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b>태아</b> ,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방법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04.01. \sim 06.30.$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비율	소득금액							
u e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 시가표준	액 적용	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신국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干当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 「초지법 * 「초지법 사업장 * 공부상 * 종중소약 제한을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나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 로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 V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확인하여 드리는 - 서비스 이용은	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up>*</sup>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4.16.(화) ~ 2024.04.2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4.1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 류 유 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③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특별 <del>공</del> 급	0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del>공통</del> 서류	0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0	⑦ 해외체류 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	⑧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⑨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0		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②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2>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0		③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아래 <표3>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3>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b>がいりなり</b>	0		④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 여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0	⑤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⑦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	
		0	⑧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사무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0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인	0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신청시 추가사항	0		③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전에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신규사업자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 (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VI-3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실수       필수     (해당자)					
				확인 및 유의사항	
	0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0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필수	변수 (해당자) ○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 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신분증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 서류         발급기준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신분증         본인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 계약시	0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sup>※</sup> 상기 제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sup>※</su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안내

-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입주자 선정 일정 및 추첨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VI

- ※ 본 주택은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인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본 주택은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이며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입주 기간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 ※ 본 아파트는 계약금 10% 이외에 2024년 5월 27일 이내에 잔금 9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자금 여력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 본 주택은 견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어 청약대상 세대 관람이 불가하고, 상품과 입지여건 등은 현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2021.09.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릅니다.
- ※ 입주지정기간(계약일~2024.05.27.까지)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 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24.05.27.) 이전에 실입주하실 경우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잔금 및 입주시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엽업일을 기준으로 함)
-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 계약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참고사항

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1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지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모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 보는 경우 8. 무혀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 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전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대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정용면적이 85제곱리되렴 출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중족하는 경우	■ 주택소유여-	부 <b>확인방법 및 판정기준</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1. 건물 등기사항증명사.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9.2. 분정물에 관한 제작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9.2. 분정물에 관한 제작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9.3. 제2조제/호다당에 따른 분양권등의 미메계약서 기. 분양권들은 종이나 그 밖의 사용로 처분한 경우 사업수제의의 계약사상 병의반경일 3. 그밖에 주해요수이부를 중입학 수 있는 서류, 사장 또는 그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  1. 상축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제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동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형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축으로 백을 취득한 경우에는 괴상숙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성인 후 20년 이상 집과된 단독주택 나. 성유제교리터 이하임 만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권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준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제로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부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축 근존자의 수요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하의 따라 부적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1. 세무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축 근존자의 수요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하의 따라 부적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1. 제2등의 목적으로 사업계획 응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백공국원처장가 숙한 제반가 20세계되다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보고하고 있는 경우 6. 만든에서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든에서 이상의 직접속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반든에서 이상의 지적증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반든에서 이상의 지적증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복 또는 건소문교회장에 때로 부적적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의 이를 필실시키가나 수택이 일심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1. 가격적의 부양가족 경영 수에는 관상 가장으로 보내되는 제3소에 따라 건축하고 보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등 취임한 경우 수목의 교육 사업가리로 제3소로과 시설가리를 취임으로 가장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요로 및 제소에 따라 건축하고 보는 경우에는 경우 소유되고 있는 경우 1. 제2조로자 보급하게 존점 기구역등을 1호 또는 1세대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다한 구식으로 매수한 사람은 제외 기존 구속 시험이 1차를 조계하는 경우 기관 전환원인 경우로자 보급하게 존점을 제보는 조상에로 모바로 제공되었다 및 문화 기관을 전용하고 있는 경우 기관을 건축으로 무를 취임한 구역이 다음 전략이 다른 각목이 다른 각목이 다른 각목의 이는 자신의 기관을 존점함이 다음 것으로 구원하고 있는 일본 가장되기 산정은 경우로 지원을 기관하는 경우 기관을 기본으로 기관을 기본을 하게 다른 경우 기관을 기본으로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는 경우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가장되기 한 구입으로 기관을 기관을 가장되었다면 보다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는 경우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는 경우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는 경우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는 경우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는 경우 기관을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처분 기준일  2. 건축물대용등분 처리일 2. 2인 보임자들에 관한 계약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 2인 보임자들에 관한 계약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문양권등의 매매 후 「부당산 거래신고 이번 만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문양권등을 중이나 구당산 거래신고 이번 가장 보다 가장 보는 교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자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상속으로 주택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제와의 계약서상 명의번경일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삼속으로 핵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적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용자리피터 이하의 단육주택 다. 용자리피터 이하의 단육주택 나. 용자리피터 이하의 단육주택 나. 용자리피터 이하의 단육주택 나. 용자리피터 이하의 단육주택 나. 용자리피터 이하의 단육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목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성하여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양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과 경우 시계 공급을 목적으로 시점계획 속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자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양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받으로 근로지 게 공급을 목적으로 시점계획 속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정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존하고 비유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용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이 아는는 패가이거나 주택이 열실되었거나 주택이 만난 단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작원들을 가장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른 공부를 가진하게 함께 사람의 경우 모수 시작문제본터 제3도조제3양에 따른 부적적자로 동보안은 발탁된 3개월 이내에 이를 열실되기가나 살펴 시작하고 있는 경우 공로 공부를 집원한 경우 모수 시작문제원부터 제3도조제3양에 따른 부적적자로 동보안은 발탁된 3개월 이내에 이를 열실되기가나 살펴 시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무대한 사람은 제외) 1. 제7조제공화를 및 제2조제제항에 대출에 따라 함께 참보안 본병을 기절 이내에 이를 열실되기가나 살펴 시작하고 있는 경우 공로 공부를 집원하고 있는 경우 보안 전용으로 공부 함께 함께 경우 모수에 가격하고 있는 영수에 경우 소유하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하고 있는 경우 만난 발생되고 함께 나면이 보면의 것을 당해야 함) 9. 주택공하되는 보안 금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는 제외할 가 주택가격이 1억동전반원(도로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략을 전후으로 반대로 자주의 반반으로 공급받아 환경되고 제품을 포하는 경우 11. 원주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즐려면 경우 경우의 반점으로 공급받아 분인으로 공급받아 환경 보안 기관 경우 문학인 1억으로 함께 보안 경우 모양이 1억으로 공급받아 함께 가장 보안 공급받아 함께 가장 보안 보안 되었다면 무료로 제정되기 전의 것을 모바 다른 자주의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각 목의 어느 하나 제작하고 있는 경우 다만, 지역 보안 기관을 취임한 경우 전략을 전략으로 함께 보안 보안 기관을 가장 함께 보안 등록 기관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숙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송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지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지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 마리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공보수 약되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공보수 약되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공보수 약되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공보수 약되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으로 당대되어 있으나 주택이 날아 사라의 설치 이나에는 패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1. 가격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작계조속을 포함한다)에 주를 개설되어 가는 경우(1세 자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혀 함은 가는 경우) 전략 모든 사용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0형제1호에 따라 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는 제외함 가 주택자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0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 사용송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집.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원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에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로서 사업주제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구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충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조도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전하고 있는 경우 11. 원차인으로서 보충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둘러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제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의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급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의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급미터를 조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의를 모양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태 국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 환환다)한 경우 12. 우주택계 취임의 입차적이 환경을 기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종족하는 경우 13. 2024년 1월 1일부가 입차인한 경우 나는 유가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 등이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리터 이하인 경우

## 단지 여건 등

VIII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 1등급		
창의 기밀	일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 1등급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제7조 제3항 제1호)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70	- '신국골의 에디자글극글제기군] 제0호 제1호에 의한 글제중 되기또한 군구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그 하우 나바 그타 . 그스퍼ㅠ /미모\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효율의 1.12배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시행규칙 제 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제7조 제3항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호	(주)서린디앤씨	(주)주신엔지니어링	상지이앤씨(주)
금액	2,754,169,110	710,105,396	608,74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b>사업주체</b> (수탁자 겸 매도인)	시공사
상호	복대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포스코이앤씨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351번길 32-2, 2층 (복대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법인등록번호	150171-0008036	174611-0002979

■ 분양문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47번지 (☎ 043-234-098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